「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8월 27일, 이창열 의원 발의

○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 . 제안이유

❍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・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,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시설 확충, 범죄예방 환경개선(CPTED), 안전교육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아동보호구역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
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규정(안 제4조)

❍ 사업추진(안 제5조)

❍ 실태조사(안 제6조)

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7조)

❍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❍ 사무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 근거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❍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 및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보호구역 관련 제도를 평창군의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